

# 『대 구 대 학 교』 ⇔ 『(재)구미전자산업진흥원』

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

## 『유비쿼터스 신기술연구센터』

### 구미분원 설치 운영 협약서

대구대학교와 (재)구미전자산업진흥원은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(이하 “기술단지”라 한다)내 『유비쿼터스 신기술연구센터』 구미분원의 설치 운영 및 상호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 협약 당사자로서 상호 이해와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기술단지 내에서 지역의 전자정보산업을 특화 육성시키는데 그 목적을 같이 하고 공동협력 하고자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본 협약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 및 상용화 상호 협력
2. 현장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
3. 기술정보, 학술정보 등의 교류
4. 기타 상호 협력에 관한 제반사항

제3조(시설 및 장비 활용지원) ① 진흥원은 양 기관이 목적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용을 지원한다.

1. 입주 공간 및 부대시설
  2. 연구개발 장비
  3. 기타 상호 협의된 시설 등
- ②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양 기관이 입주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이나 기술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.

제5조(상호협약의 변경) 양 기관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해약) 양 기관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해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.

1. 기술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심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
2. 양 기관의 협약서상의 협력분야가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
3. 기타 양 기관이 스스로 해약을 원하는 경우

제7조(효력발생 및 협력기간)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협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07 년 4 월 25 일

대 구 대 학 교

(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)

(재)구미전자산업진흥원

(경북 구미시 산동면 국가산업단지 4단지 13블록)

총 장 이 용 두

이 용 두

원 장 박 재 우

박 재 우